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39192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1.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E

변론 종결 2016. 9. 22.

판결 선고 2016. 10. 6.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475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공동피고 B와 피고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제1심공동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5. 27. 접수 제30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공동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219,492,9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219,492,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2행 "2015. 7. 11.경"을 "2014. 7. 11.경"으로 정정함.

) 제1심판결문 8면 7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③ 제1심공동피고 B의 누나 G(피고 E의 처)은 2013. 4. 1. B에게 295,000,000원을대여하였다(을 제10호증의 1, 금융거래내역서). 피고 E은 2014. 2. 28. B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 부동산 중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4. 3. 1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은종전 임차인 H에게 지급하고, 위 대여금 중 1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B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중 피고 E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그밖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4,200만 원,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여기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선대의 분묘가 위치한 선산으로 종손인 피고 C에게 증여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이 아들과 매형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로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하더라도 B이 위 각 계약 무렵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목록

강원도 원주시 일야 30050㎡ 중 공유자 5분의
3 지분

제2목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169.2㎡

제3목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연화조 평스타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94.66㎡

2층 94.44㎡

3층 25.82㎡

3층 11.66㎡(계단실)

지층 94.66㎡ (합)